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0. 26 선고 2022가단161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11. 4. 접수 제119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 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11. 4.자 매매는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림

[별지1]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소외 C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48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금 20,000,000원 및 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C 의 부친으로서 원고가 C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 E F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에 집행할 것을 대비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입니다.

2. 원고와 소외 C 간 집행권원 확보 등

원고는 소외 C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48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원금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소갑제 1 호증, 이행권고결정 참조)

3. 소외 C 과 피고간의 사해행위(피고의 무자력, 사해의사 등)

상황이 위와 같이 되자 소외 C 은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부친 B 과 통모하여 2019. 11. 4.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11. 4. 접수 제1197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소갑제 2 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원고가 이곳저곳 수소문해서 최근 알아본 결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매수자를 C 의 부친인 B

으로 한 매매계약이었고, C은 부친 B과 통보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의 C과 피고 B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허위 통보의 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써 위와 같은 허위 통보의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원고가 소의 C의 모든 재산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등기부상 주소변동 내역으로 C의 재산을 추적하여 본 바로는, 본 건 부동산만이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고 원고가 집행력있는 문건을 득한 이후 이를 처분함으로써 본인은 무자력이 되고 매때로 부친에게 처분한 것을 볼 때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소의 C의 원고로서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원고취소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도로명 주소] 안양시 만안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46.61㎡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대 79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92 분의 33.1514

- 이 상 -

